이사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다.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④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성)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5월, 8월, 11월을 제외한 매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단, 부의안건이 없을 경우 미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6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인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의장인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 규정 제4조 3항에 정한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인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의 소집시에는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회의일자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해당 결의에 대해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7.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보수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의 배당 결정
13. 법정준비금의 감액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의 결정
2.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또는 투자지분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8. 지점,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9.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규정

나. 법령이나 사규 자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규정

10. 100억원 이상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3. 1억원 초과 기부 또는 2년 이상 장기 기부가 필요한 사회공헌사업

14. ESG 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1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전환사채의 발행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4. 준비금의 자본 전입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6.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입, 보증, 담보제공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단, 실물 기반의 무역금융 제외)

7.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 및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8.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에 관한 사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회사간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0억원 이상)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0억원 이상)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0억원 이상)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의 사항

제 10 조 (보고사항)

①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③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경우의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④ 3월에 1회 이상 이사에 의해 보고되어야 하는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⑤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2 (긴급사항)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장인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거 긴급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ESG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운영 및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 이 규정 및 각 위원회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내용 또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써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6 조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자격과 선임,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운영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 (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두며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의 수집, 기타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0.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